

음주 후 조도불량 계단 이동 중 넘어짐 재해

재해일자	2018년 9월 10일	재해현황	사망 1명
작업명	계단 이동	재해장소	서울 용산구 D 아파트

재해발생 개요



<재해자 발견 장소>

2018. 9. 10(월) 오후 20:30경 용산구 D 아파트의 지상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방재실로 내려가던 재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어 사망함. 쓰러져 있던 재해자를 아파트 주민이 발견한 후, 재해자가 의식이 있었기에 방재실에 눕혔으나, 9.11(화) 05:30경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의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여 119에 신고 및 병원 이송 하였으나 기 사망 판정

재해발생 원인

1. 계단 통로 조도 미흡

- 지상에서 지하 지하 1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야간 조도를 측정한 결과 재해자 발견장소인 전기실 앞은 8럭스 그 외 계단부의 조도는 0 럭스로서 통로의 조도 기준인 75럭스에 비해 매우 미흡함

2. 근무 중 음주

- 근무 중 석식 시간에 외부에서 음주 후 신체 균형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두운 환경의 계단을 이동
- *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 0.318% (운동신경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농도에 해당)

재해예방 대책

1. 야간 이동통로 조도 확보

- 지상에서 지하 방재실로 내려가는 전 구간의 야간 조도가 75 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 개선

2. 근무 시간 중 음주 금지

- 음주 후에 조명이 어두운 계단 통로를 이동할 경우 넘어짐 재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석식 등의 시간에 음주하지 않도록 관리